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청소행정과

(2017. 5. 1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4월 27일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○ 2017년 5월 2일

4. 관계법규

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제정이유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○ 재활용의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

6. 주요 제정 내용

1)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

○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2항 : 6호 신설

- "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" 추가

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○ 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금) : 변경

- 상위법 조항변경 : 제25조→31조
- 장려금, 보상금 지급 →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

3)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례 정비

○ 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: 변경

- 시민 → 구민,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
-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, 부회장 명칭을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 변경
- 위원의 임기 연임조항 신설 : 한차례 연임 가능

○ 제5조의 2(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 : 신설

4)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변경, 기타 맞춤법 수정

○ 제7조(과태료 부과·징수)~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: 삭제

- 과태료부과·징수 사항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준용

○ 제11조(준용규정) : 변경

- 지방세 징수의 예 →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

○ 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: 삭제

- 과태료 귀속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준용

7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상위법 개정,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용

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·정비하여 우리 구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재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조금씩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포구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은 구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,

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령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자원재활용법)

〔시행 2016.5.29.〕〔법률 제14230호, 2016.5.29., 일부개정

제31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재활용사업자"라 한다)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(借款)을 알선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7.23., 2013.5.22., 2014.1.21.〉